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예	아니오
1.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대표자가 맞습니다.		
<p>* 1번 항목에 '아니오' 를 체크한 경우 작성요망</p> 1-1. 그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과는 어떤 관계이고, 제출자의 직위와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직위:	성명: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고자 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지원된 '지원금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 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3.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없습니다.		
4.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업) 중 근로를 한 직원은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한함)		
6.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없습니다.		
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해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없습니다.		
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휴업·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더 많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11. 개인 휴대전화 번호 수집은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실과 다르게 실시하거나 허위로 실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요청드리오니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직원들에게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 귀하